제316회 서산시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

서산시 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▣ 서산시장 제출 (의안번호 제58호)

2026. 10.

행정문화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

〈서산시 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
검 토 보 고 서

Ⅰ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58호

○ 제 출 자 : 서산시장

○ 발의일자 : 2026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13일

Ⅱ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❍ 맞춤법에 맞는 용어 교정을 통한 조례의 신뢰성 확보

❍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·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이·통장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 수정 : 리·통장 → 이·통장

나.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 신설

❍ 대 상 : 이통장 본인(380명) / 격년(ex. 짝수연도 → 짝수연도 출생자 지원)

❍ 방 식 : 건강검진 실비지원(**30만원 한도**)

❍ 소요예산 : 매년 6천만원 * 300,000원 × 200명(예비분 포함) = 60,000천원

- 1마을 1인 원칙
- 개인 사정 등으로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, **익년도 추가지원 불가**
- 지원 금액 **1인 최대 300천원 초과시, 추가 금액 본인 자부담**
- 건강검진 외 개인 **치료 목적의 비용은 지원 불가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목적

○ 본 개정안은 이·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·통장의 건강관리 및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적 근거

-「지방자치법」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

- 같은법 제13조 제2항 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자치사무로 명시

하고 있음

-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이·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- 이·통장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 비용 지원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자치사무의 영역으로 상위법령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
- 지역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·통장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《지방자치법》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《지방자치법 시행령》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나. 조례 제명 및 조문상 이·통장으로 변경 (안 제1조, 제2조 제1항, 제2항,제5호,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, 제4조 제1항,제2항, 제3항, 제5조, 제6조 제1항4호,6호, 제2항)

- 개정안 요지 : 현행 조례의 제명 및 각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'리·통장'을 '이·통장'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임

- 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산시 리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	서산시 이·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리·통장의 임무 및 복무와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이·통장----------
제2조(리·통장의 임무) ① 리·통장은 리·통 구역안에서의 읍·면·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.	제2조(이·통장의 임무) ① 이·통장----------
② 리·통장은 리·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	② 이·통장-----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리·통	5. ---------- 이·통장

장 역할 수행	--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복무) ① 리·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·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.	제3조(복무) ① 이·통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삭 제	
③ 리·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·면·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.	③ 이·통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④ 리·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·인수서를 작성하여 리·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·면·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	④ 이·통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이·통 담당공무원 이 ---------- --------. ---------- - 읍·면·동장, 인계자, ---------- ----------.
제4조(실비 변상) ① 리·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,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	제4조(실비 변상) ① 이·통장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	----------.
② 리·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	② 이·통장----------.
③ 리·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.	③ 이·통장----------.
제5조(편의 제공) 리·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·면·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	제5조(편의 제공) 이·통장----------.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리·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) ① ----- 이·통장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모범 리·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·외 연수 실시	4. --- 이·통장--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6. 리·통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지원	6. 이·통장 ----------
② 시장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·통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이·통장----------

- 검토의견 : 법제처가 발간한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하면 구역을 나타내는 '리(里)'를 두음법칙에 따라 '이'로 쓰면 대명사'이'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'리'로 쓰지만 **'리(里)의 장(長)'은 '이장'으로 쓰도록 명시하고 있음**

다. 이·통장의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신설 (안 제6조 제1항 제7호)

- 개정안 요지 : 이·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사항임

- 개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) ① 시장은 리·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<신 설>	제6조(지원) ① ----- 이·통장---------- ----------. 7. 이·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

- 검토의견 : 이·통장 개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 개정안에 지원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【참고자료 1: 충남 도내 타 시·군 지원 현황】

구 분	건강검진비 지원 유무(지원액)	구 분	건강검진비 지원 유무(지원액)
천 안 시	무	금 산 군	무
공 주 시	무	부 여 군	무
보 령 시	유 (200,000원)	서 천 군	무
아 산 시	무	청 양 군	유 (300,000원)
논 산 시	유 (300,000원)	홍 성 군	무
계 룡 시	유 (200,000원)	예 산 군	무
당 진 시	유 (250,000원)	태 안 군	유 (470,000원)

【참고자료 2: 서산시 15개 읍·면·동 이·통장 현황】

(2025. 11. 30.기준, 단위 : 명)

구 분	이·통장	구 분	이·통장	구 분	이·통장
대산읍	32	성연면	31	부춘동	21
인지면	23	음암면	30	동문 1	16
부석면	26	운산면	31	동문 2	14
팔봉면	22	해미면	27	수석동	22
지곡면	22	고북면	31	석남동	32

5. 종합검토의견

가. 본 개정안은 리·통장에서 이·통장으로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 사용과,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·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나.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리·통장을 이·통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사항임

다.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81조에 의해 이·통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·통장 개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함

라. 마을의 대표자로 지역의 봉사자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이·통장은 주민 의견 수렴, 각종 행정 시책 홍보,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마. 충남 도내 타 시·군 중 보령, 논산, 계룡, 당진, 청양, 태안 등 6개 시·군에서도 이미 시행중에 있음 **【참고자료 1】**

바.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